#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08

발의연월일: 2020. 6. 5.

발 의 자:신동근・고용진・양향자

이정문・홍영표・김철민

전재수 · 윤관석 · 김윤덕

김영주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생활 및 국민경제의 안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요 물품 등에 대하여 최고가격을 지정하거나 특정 물품의 공급·출고 등에 대한 긴급조치를 시행하는 등의 물가안정장치를 두고있음.

그리고 현행법 시행령은 집행명령 차원에서 이러한 최고가격 지정이나 긴급수급조정조치의 발동요건을 내우외환, 천재지변, 긴급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등이 발생하는 경우로 구체화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발병으로 인하여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에 대한 가격이 급증하고 마스크 등의품귀 현상으로 국민적 불안감이 지속됨에 따라, 해당 물품의 조속한수급안정을 위하여 최고가격 지정 및 긴급수급조정조치 등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감염병의 유행과 같은 내우외환, 천재지변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국민생활 및 국민경제의 안정이 위태롭게 될 경우에 최고가격 지정 및 긴급수급조정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법률 에서 해당 요건을 예시함과 동시에 위임의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현행 법에 따른 물가안정장치의 법체계적 정당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 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법률 제 호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국민생활"을 "내우외환, 천재지변, 긴급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국민생활"로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물가"를 "내우외환, 천재지변, 긴급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물가"로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아 정 제2조(최고가격의 지정 등) ① 정 제2조(최고가격의 지정 등) ① --부는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내우외환, 천재지변, 긴급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등 대통 정할 때에는 특히 중요한 물품 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의 가격, 부동산 등의 임대료 경우로서 국민생활-----또는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최 고가액(이하 "최고가격"이라 한 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긴급수급조정조치) ① 정부 | 제6조(긴급수급조정조치) ① ----는 물가가 급격히 오르고 물품 ---내우외환, 천재지변, 긴급한 공급이 부족하여 국민생활의 재정·경제상의 위기 등 대통령 안정을 해치고 국민경제의 원 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활한 운영을 현저하게 저해할 물가----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 의 사업자나 수출입 또는 운송 이나 보관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개월 이내의 기간 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수급조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